별정직관리요령

| -JJ 7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| -11 -1 000E 00 10 | -1) -1) 0010 10 01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1993.12.23 | 개정2007.03.16 | 개정2016.12.21 |
| 개정1995.07.01 | 개정2007.08.17 | 개정2017.07.28 |
| 개정1995.10.05 | 개정2008.06.09 | 개정2017.09.22 |
| 개정1997.03.12 | 개정2010.05.07 | 개정2018.12.26 |
| 개정1999.07.08 | 개정2013.03.28 | 개정2022.05.26 |
| 개정2000.10.24 | 개정2014.05.19 | 개정2022.08.30 |
| 개정2002.02.15 | 개정2014.09.11 | 개정2022.12.29 |
| 개정2006.09.15 | 개정2016.10.11 | 개정2023.09.18 |

[인사부 042-600-8161]

제 1 장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별정직원에게 적용할 인사, 보수,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요령은 고문·계약직원·전임직·시간선택제채용직원에게 적용된다. 다만, 육아 휴직 등 대체인력과 대외사업 완료를 위하여 해당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4.9.11, 2016.10.11, 2017.9.22, 2018.12.26>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고문 : 사장의 회사 운영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위하여 위촉된 자
- 2. 계약직원 : 전문적인 지식, 기능, 경험을 요하는 특수직무와 임시적 필요 등으로 인하여 기한을 정하여 채용한 자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채용한 자 <개정 2007.8.17>
- 3. 전 임 직 :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월급제로 사용하는 직제 내의 사용인 <개정 2006.9.15, 2017.9.22>
- 4. 시간선택제채용직원 :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고, 근로조건이 근로시간비례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직제 내의 사용인 <신설 2014.9.11>
- 5. (삭 제) <개정 2014.9.11, 2016.10.11>
- 6. 관리부서 : 별정직원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<개정 2014.9.11, 2022.5.26.>
- 7. 운영부서 : 별정직원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 <개정 2014.9.11>
- 8. (삭 제) <개정 1999.7.8., 2014.9.11>

제4조(근무형태) 별정직원의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고문 및 계약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수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7>
- 2. 전임직은 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22>
- 3.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근무형태는 시간선택제채용직원운용지침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9.11. 개정 2023.9.18>

제4조의 2(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 등급)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등급은 1급, 2급, 3급, 4급, 5급, 6급, 7급, 8급, 9급, 10급, 11급, 12급으로 구분한다.

<신설 2000.10.24, 개정 2006.9.15, 2013.3.28, 2014.9.11, 2017.9.22>

- 제4조의 3(전임직으로의 환직) ① (삭 제) <신설 2008.6.9, 개정 2013.3.28>
- ② (삭 제) <신설 2008.6.9, 개정 2013.3.28, 2018.12.26>
- **제5조(직제)** ①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직군, 직렬, 직무, 업무내용 및 초임등급은 '별표1'과 같다. <개정 1999.7.8, 2006.9.15, 2014.9.11, 2017.9.22>
- ② 계약직원의 직군, 직렬, 직무, 업무 내용은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 기준을 적용하되,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직위에 대해선 달리 적용 가능하다. <신설 2017.9.22>
- 제5조의 1(사전심사) ① 상시·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. <신설 2018.12.26>
- ② 비정규직 운영이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. 사전심사에 필요한 절차 등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8.12.26>
- **제6조(운영)** ① 운영부서장은 채용 또는 위촉된 인원이 해당 업무가 종료 또는 중지되었거나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원의 감축 등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2.15>
- ② 운영부서장은 계약직원, 전임직, 시간선택제채용직원, 일용원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, 근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부적정한 조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결과의 책임은 운영부서장이 진다. <신설 2000.10.24, 2014.9.11, 2017.9.22>
- ③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9.11.>
- ④ 운영부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제 직원을 연장운영하는 경우 2년 단위로 [별표4]에 의한 평가후 80점 이상 직원에 대하여 연장하여 운영한다.<신설 2022.12.29>

제 2 장위촉·채용 및 해촉·해고

- 제7조(고문)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위촉한다. 제8조(계약직원) ① 계약직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8, 2007.3.16, 2007.8.17, 2022.5.26>
- ② 계약직원의 채용은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정권자가 한다. <개정 1999.7.8, 2000.10.24, 2006.9.15, 2022. 5.26>
- ③ 계약직원의 채용시에는 근로계약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한다. <개정 1999.7.8, 2006.9.15., 2022.5.26>
- 제8조의 2(계약직원의 재운영) ① (삭제) <개정 1999.7.8, 2007.3.16, 2007.8.17, 2022. 5.26>
- ② (삭제) <개정 1999.7.8, 2007.3.16, 2022.5.26>
- ③ (삭제) <신설 2007.3.16, 2022.5.26>
- 제9조(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) ①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은 서류, 필기, 면접 등 경쟁적 전형에 의하여 채용하고, 그 결정은 사장이 하며, 세부 채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- <개정 2002.2.15. 2007.3.16. 2013.3.28. 2014.9.11. 2017.9.22>
- ② (삭 제) <개정 1999.7.8, 2013.3.28>
- ③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부서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1999.7.8, 2014.9.11, 2017.9.22> **제10조(결격사유)** ① 인사규정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원으로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0.5.7>
- ② (삭 제) <신설 2010.5.7, 개정 2022.5.26>

제11조(구비서류) ① 별정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- 1. 이력서
- 2. 학력증명서
- 3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<개정 1999.7.8>
- 4. 주민등록등본 <개정 1999.7.8>
- 5. 병역관계증명서(주민등록초본, 남자에 한함) <개정 1999.7.8>
- 6. (삭 제) <개정 1999.7.8. 2022. 5.26>
- 7.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<개정 1999.7.8>
- 8. 기타 인사관리상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<개정 1999.7.8>
- ② 사회적 신분이 뚜렷한 저명인사를 고문 또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 등록등본 이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촉 또는 채용) ① (삭 제) <개정 1999.7.8>

② (삭 제) <개정 1999.7.8>

제13조(초임호봉) ① (삭 제) <개정 1999.7.8, 2000.10.24, 2006.9.15>

- ②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, 입사 전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2년을 한도로 매 1년에 1호봉을 가산하되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월단위로 가산하고 월미만은 절사한다. <개정 2000.10.24, 2014.9.11, 2016.12.21, 2017.7.28, 2017.9.22. 2018.12.26>
- ③ (삭제) <개정 1999.7.8, 2000.10.24, 2006.9.15, 2016.12.21, 2017.7.28, 2017.9.22>
- ④ (삭 제) <신설 2007.8.17, 개정 2013.3.28>
- **제14조(숭호)** ①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정기숭호는 일반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7.7.28. 2017.9.22>
- ②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특별승호는 일반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7.7.28, 2017.9.22>
- ③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징계 면제 및 말소 후 호봉승호는 일반직원에 준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7.7.28, 2017.9.22>
- **제15조(정년)**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 별정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단 시설환경 직렬의 시설관리, 경비, 청소 직무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 <개정 2007.3.16, 2014.5.19, 2016.10.11, 2022.5.26>
-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일은 일반직원 적용기준을 적용한다. <개정 1999.7.8.>
- 제16조(해고 및 해촉사유) 별정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- 1.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<개정 2007.3.16>

- 2. 채용 및 위촉 결격사유가 있을 때
- 3.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- 4. 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에 이를 때(비상근 별정직 제외) <개정 1999.7.8>
- 5. 회사의 승인 없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할 때(비상근 별정직 제외) <개정 1999.7.8>
- 6. 회사의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될 때 <개정 2006.9.15>
- 7. 해당 작업이 종료·중지 또는 감소되거나 회사 형편상 감원이 불가피할 때
- 제17조(해고 또는 해촉의 예고) ① 상근 별정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자를 고용 예정 만기일 전에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고 또는 해촉할 때에는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9.15>
- 제18조(면직) ① 별정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「인사규정시행세칙」상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7.3.16, 개정 2013.3.28>
- ② 상근 별정직원이「인사규정」제32조, 제3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 단,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별정직원은 인사규정 제32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 장복무

- 제19조(복무) 별정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요령,「전임직운용지침」,「시간선택제채용직원운용 지침」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「인사규정」및「취업규칙」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6.9.15, 2014.9.11, 2017.9.22>
- 제20조(연차유급휴가) ① 별정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「취업규칙」의 관련 조항에 의하며, 휴가사용 및 적용기준은 일반직원에 준한다. 단,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선택제채용 직원우용지침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7.8, 2014.9.11., 2022.5.26., 2023.9.18>
- ② (삭 제) <개정 1999.7.8, 2006.9.15>
- ③ (삭 제) <개정 1999.7.8, 2006.9.15, 개정 2022.5.26>
- ④ (삭 제) <개정 1999.7.8, 2006.9.15, 개정 2022.5.26>
- ⑤ (삭 제) <신설 2006.9.15, 개정 2022.5.26.>
- 제20조의 2(휴일) 별정직원의 휴일은「취업규칙」의 관련 조항에 의한다. <신설 2006.9.15>
- 제20조의 3(휴직) 별정직원의 휴직은「취업규칙」의 관련 조항에 의한다. 다만, 고문·기한을 정한 계약직원은 제외하나,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- <신설 2006.9.15, 개정 2007.8.17>
- 제20조의 4(특별유급휴가) 별정직원의 특별유급휴가는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의하며, 휴가 사용 및 적용기준은 일반직원에 준한다. <신설 2006.9.15>
- 제20조의 5(휴게) 별정직원의 휴게시간은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의한다. 단,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에 대해서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. <신설 2014.9.11>

제20조의 6(시업 및 종업시각) 별정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의한다. 단,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경우 시업 오전 10시, 종업 오후 3시를 원칙으로 하나,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9.11, 개정 2022.5.26>

제21조(근태관리) 별정직원의 근태관리는 일반직원에 준한다.

제22조(포상) 별정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준한다. <개정 1999.7.8>

제23조(장계) 별정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준하며,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으로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 직급 강등의 적용은 등급을 1계급 내리는 것으로 한다.

<개정 1999.7.8, 2014.5.19, 2014.9.11, 2018.12.26>

제24조(출장) ① 운영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정직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1. 고문 및 계약직원 : 해당 보수 또는 직(등)급 대우에 준하는 여비 <개정 1999.7.8>
- 2.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 : 6급 직원에 준하는 여비 <개정 1999.7.8., 2006.9.15, 2014.9.11, 2018.12.26>

제25조(승급 및 근무성적평정) ① 전임직의 상위등급으로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전임직운용지침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7.8, 2008.6.9, 2017.9.22>

- ② 별정직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「인사평정지침」으로 정한다.
- <신설 2008.6.9, 개정 2013.3.28, 2017.9.22>
- ③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상위등급으로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「시간선택제채용직원운용지침」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9.11>

제26조(당직) ① 계약직원, 전임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22> ② 제1항의 경우 당직비는 일반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

제 4 장보수

제27조(보수의 종류) ① 고문 및 계약직원의 보수종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1999.7.8>

- 1. 기본연봉 또는 기본월봉<개정 1999.7.8>
- 2. 제수당 <개정 1999.7.8.>
 - 가. 연차수당 <개정 2006.9.15>
 - 나. 시간외 근무수당
 - 다. 기타 법정수당
- ②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보수종류는 직원의 보수규정에 따르되,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은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한다. <개정 1999.7.8, 2014.9.11, 2016.12.21, 2017.7.28, 2017.9.22>
- 제28조(보수지급) ① 고문 및 계약직원 보수는 대우직(등)급,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으로 책정하되 보수의 지급은 월액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액으로 책정하고, 수당은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1999.7.8>
- ② 전임직,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기본급은 '별표2' 및 '별표3'에 따른다. 또한 직무급은 년간

정액 5,751,000원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지급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.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 단,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원의 보수는 급여담당임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당은 일반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0.5.7, 2014.9.11, 2017.9.22, 2022.5.26, 2022.8.30., 2022.12.29., 2023.12.28>

- ③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일반직원에 준한다. 단,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정한 방식에 의한다. <개정 1999.7.8>
- 제29조(퇴직금) ① 상근 별정직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「보수규정」을 준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입사 시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개정 1999.7.8., 2006.9.15>
- ②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「시간선택제채용직원운용지침」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9.18>

제 5 장복리후생

제30조(복리후생비) 별정직원의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9.7.8>

- 1. 고문 및 계약직원 :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한 경우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1999.7.8, 2007.8.17>
- 2. 전임직 : 일반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 <개정 1999.7.8, 2017.9.22>
- 3. 시간선택제채용직원 : 일반직원에 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4.9.11>

제31조(사택입주) 상근 별정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중요도 및 사택사정을 고려하여 사택에 입주시킬 수 있다.

제32조(피복지급) 상근 별정직원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3조(재해보상) 상근 별정직원으로서 회사 업무 수행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직원에 준한 보상을 한다.

제34조(형사피의자보상) 상근 별정직원이 현장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가 된 경우 임금·벌금·과료 및 변호비의 지급은 일반직원에 준한다. <개정 1999.7.8>

제 6 장보칙

제35조(위임)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1999.7.8>

부칙

이 요령은 199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요령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

- 1. 이 요령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일용원 중 상용원으로 전환하는 일용원은 근무경력에 매 1년에 1호봉씩을 초임호봉에 가산하다.
- 2. 이 요령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별정(기능직급 대우 촉탁 또는 계약직원)직원은 상용원으로 전환하고 호봉 및 정기승호일은 별정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3. 일용원의 정기 승호일은 상용원으로 전환한 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요령은 199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요령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용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특별승호하며 정기승호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부칙

이 요령은 199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요령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요령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요령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요령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요령 개정일 현재 재직중인 상용원은 개정전 해당등급을 적용한다.

| | 부칙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 요령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이 요령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| 환직시 계약직 총 재직년수를 반영하여 근무 2. 신설하는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최근 2년 | 약직원이 이 요령 시행에 따라 상용원 8등급으로 |
| 이 요령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| 이 요령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| 이 요령은 201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| 이 요령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| 이 요령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| 이 요령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| ① 이 요령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 |

② (경과조치) 이 요령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요령은 2017년 9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이 요령 개정 전 상용원은 전임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등급과 호봉은 개정 전 상용원 등급 및 호봉을 적용하며, 승급·승호 등 전임직 인사관리기준 적용시 개정 전 상용원 등급별 근무기간은 전임직 근무기간으로 본다.

부칙<2018.12.26>

- ① (시행일) 이 요령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
- ② (경과조치) 제13조 제2항의 군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적용은 2019.1.1이후 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22.1.1>

이 요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. 제28조(보수지급) 제2항의 직무급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22.5.26>

이 요령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2.12.29>

- ① (시행일) 이 요령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8조(보수지급) 제2항 '별표2', '별표3'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3.9.18>

이 요령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3.12.28>

이 요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28조(보수지급) 제2항의 직무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 **직군·직렬·직무·업무내용 초임등급** <개정 2013.3.28, 2014.9.11., 2017.9.22., 2022. 5.26>

| 작군 | 직렬 | 직무 | 주요 업무내용 | 초임등급 | 비고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| | 행정 | ○ 행정지원 ¹⁾ | 9급 | ^{주1)} 행정지원 범위 - 회계결의서 작성 | | |
| | 경영 기획 | 회계 | ○ 전표관리 | , 9 _Н | - 예산관리 - 회의자료 작성 | | |
| 권성 | | 총무 | ○ 비서, 안내 | | - 사업, 예산 등 실적자료 작성 | | |
| 경영 | 맟 | 인사 | ○ 기록물관리 | 07 | - 문서 관리 -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| | |
| | 경영 관리 | 보수 노사관리 | ○ 콘도관리, 기금관리 | 9급 | -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| | |
| | | 교육 | ○ 교육원 운영지원, 시설관리 | | - 문서 작성 - 기타 서무 업무 | | |
| | 정비 사업 관리 | 정비사업관리 | ○ 작업결과 및 정비실적 입력 ○ 기타 정비사업관리 지원 | | ^{주2)} 경정비 범위 - 공기구 및 자제운반 | | |
| | | 기지 기계정비 (프로세스) | ○ 기지 프로세스설비 경정비 ²⁾ ○ 기타 정비지원 | | 외관점검 이물질 및 녹 제거 기기 및 부품 세척 도장작업 작업현장 청소 및 | | |
| | | 기지 기계정비 (유틸리티) | ○ 기지 유틸리티설비 경정비 ○ 기타 정비지원 | 0.7 | | | |
| 정비 · 운영 | 기지 정비 | 기지 계전정비 (전기설비) | ○ 기지 전기설비 경정비 ○ 기타 정비지원 | 9급 | 정리정돈 - 차량 운전 - 배관부속시설물 | | |
| (O& M) | | 기지 계전정비 (계기설비) | 계전정비 | | 점검 및 보수 - 제초작업 - 교통통제 | | |
| | | 기지 계전정비 (계측제어설비) | ○ 기지 계측제어설비 경정비 ○ 기타 정비지원 | | - 방식 및 탐측업무 지원 등 정비지원 | | |
| | 관로 | 관로 기계정비 | ○ 관로 기계정비 경정비 ○ 기타 정비지원 | 9급 | | | |
| | 정비 | 관로 계전정비 | ○ 관로 계전정비 경정비 ○ 기타 정비지원 | 7 11 | | | |

| 작군 | 직렬 | 직무 | 주요 업무내용 | 초임등급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|---|
| 정비 | 정비 · 관로 | 관로검사 | ○ 관로검사 경정비○ 배관부속시설물 점검 및 보수○ 기타 관로검사지원 | | |
| 운영 (O& M) | 정비 | 방식 | ○ 피복건전성 탐측 지원 ○ 전위측정 지원 | 9급 | |
| | | ILI운영 | ○ ILI피깅 데이터 분석 | | |
| | 사업 관리 | 사업관리 | ○ 사업관리 지원 업무 ○ 각종 인허가관련 지원 업무 ○ 각종 입찰 지원 업무 ○ 각종 업면허 관리 지원 업무 | 9급 | |
| | 영업 | 영업 | ○ 각종 프로젝트 수주 및 현장 지원업무 | 9급 | |
| | | 공정설계 | ○ 공정설계도면 작성○ 설계지원 업무³⁾ | | 주》설계지원 범위 - 분야별 사양서, 절차서 작성 지원 - 분야별 계산서 작성 지원 - 분야별 도면검토 및 물량 산출 - 분야별 공사설계서 |
| | | 기계설계 | ○ 기계설계도면 작성 ○ 설계지원 업무 | | |
| 설계 · | | 계장설계 | ○ 계장설계도면 작성 ○ 설계지원 업무 | | |
| 조달 · | | 전기설계 | ○ 전기설계도면 작성 ○ 설계지원 업무 | | |
| 건설 | 설계 | 배관설계 | ○ 배관설계도면 작성 ○ 설계지원 업무 | 9급 | 작성 지원 - 성과물 발주처 제출 |
| | | 토목설계 | ○ 토목설계도면 작성○ 설계지원 업무○ 각종 인허가관련 지원 업무 | | 및 시스템 등록 - 도급기성자료 준비 |
| | | 건축설계 | ○ 건축설계도면 작성 ○ 설계지원 업무 ○ 각종 인허가관련 지원 업무 | | 및 하도급 기성 현황 관리 - 인허가 서류 작성 |
| | | 구조설계 | ○ 구조설계도면 작성 ○ 설계지원 업무 | | 지원 - 프로젝트 행정업무 |
| | | 소방설계 | ○ 소방설계도면 작성 ○ 설계지원 업무 ○ 각종 인허가관련 지원 업무 | | 지원 |

| 작군 | 직렬 | 직무 | 주요 업무내용 | 초임 등급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|
| 아전 | 아전 | 안전 | ○ 안전활동 실적 입력 ○ 기타 안전활동 지원 | 07 | |
| 안신 | 안신 | EHSQ | ○ EHSQ활동 실적 입력 ○ 기타 EHSQ활동 지원 | 9급 | |
| 전산 | 전산 |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| ○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⁴⁾ ○ 기타 전산보조 업무 ⁵⁾ | 9급 | ^{주에} 프로그램 수정범위 - 단순 프로그램 코 당 및 자료정리 - 장애 제거 및 보완 ^{주에} 전산보조 범위 |
| | 선선 선선 | 업무용PC 네트워크 유지관리 | ○ 업무용 PC 유지관리 ○ 네트워크 유지관리 | , , , , | - 정보화 사업 행정 업무 지원 - 헬프데스크 지원 - 시스템 이전설치 지원 |
| | | 시설관리 | ○ 사옥 및 합숙소 등 시설관리 | 9급 | |
| 시설 | 시설 | 설 운전 ○ 차량운전, | ○ 차량운전, 차량관리 | 기비 | |
| 환경 | 환경 | 경비 | ○ 사옥 경비 | 10⊅ | |
| | | 청소 | ○ 사옥 및 합숙소 등 청소, 세탁 | 12급 | |

【별표 2】<개정 2022.5.26., 2022.8.30., 2022.12.29., 2023.12.28> 전임직 기본급표

(단위 : 원)

| 호 | 전임직 | 전임직 | 전임직 | 전임직 | 전임직 | 전임직 | 전임직 | 전임직 | 전임직 | 저이지 | | ¹ 위 · 원 <i>)</i> 저이지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봉 | 전급적 1급 | 2급 2급 | 3급 | 선급적 4급 | 전함적 5급 | 전 급격 6급 | 전함적 7급 | 전념적 8급 | 전급적 9급 | 전임직 10급 | 전임직 11급 | 전임직 12급 |
| 45 | 4,812,970 | 4,573,140 | 4,444,240 | 4,286,310 | 4,154,240 | 4,045,830 | 3,949,890 | 3,874,610 | 3,764,740 | 3,709,130 | 3,653,530 | 3,597,920 |
| 44 | 4,759,790 | 4,519,940 | 4,391,090 | 4,233,180 | 4,101,170 | 3,992,710 | 3,896,760 | 3,821,530 | 3,711,620 | 3,656,020 | 3,600,430 | 3,544,810 |
| 43 | 4,706,680 | 4,466,810 | 4,337,950 | 4,180,030 | 4,048,080 | 3,939,670 | 3,843,650 | 3,768,420 | 3,658,510 | 3,602,900 | 3,547,290 | 3,491,680 |
| 42 | 4,653,500 | 4,413,650 | 4,284,760 | 4,126,890 | 3,994,960 | 3,886,540 | 3,790,580 | 3,715,300 | 3,605,400 | 3,549,790 | 3,494,200 | 3,438,580 |
| 41 | 4,600,340 | 4,360,450 | 4,231,620 | 4,073,760 | 3,941,860 | 3,833,430 | 3,737,450 | 3,662,190 | 3,552,300 | 3,496,700 | 3,441,080 | 3,385,480 |
| 40 | 4,547,230 | 4,307,300 | 4,178,480 | 4,020,660 | 3,888,780 | 3,780,350 | 3,684,390 | 3,609,140 | 3,499,220 | 3,443,630 | 3,388,030 | 3,332,420 |
| 39 | 4,494,090 | 4,254,110 | 4,125,350 | 3,967,510 | 3,835,640 | 3,727,220 | 3,631,270 | 3,556,030 | 3,446,130 | 3,390,530 | 3,334,930 | 3,279,320 |
| 38 | 4,440,920 | 4,200,950 | 4,072,180 | 3,914,370 | 3,782,580 | 3,674,150 | 3,578,190 | 3,502,910 | 3,393,000 | 3,337,420 | 3,281,810 | 3,226,200 |
| 37 | 4,387,770 | 4,147,820 | 4,019,060 | 3,861,230 | 3,729,510 | 3,621,080 | 3,525,100 | 3,449,830 | 3,339,940 | 3,284,330 | 3,228,730 | 3,173,120 |
| 36 | 4,334,640 | 4,094,610 | 3,965,880 | 3,808,100 | 3,676,390 | 3,567,960 | 3,472,010 | 3,396,730 | 3,286,850 | 3,231,240 | 3,175,640 | 3,120,020 |
| 35 | 4,281,450 | 4,041,460 | 3,912,760 | 3,754,990 | 3,623,280 | 3,514,850 | 3,418,890 | 3,343,600 | 3,233,710 | 3,178,110 | 3,122,500 | 3,066,900 |
| 34 | 4,228,310 | 3,988,300 | 3,859,570 | 3,701,850 | 3,570,210 | 3,461,760 | 3,365,790 | 3,290,550 | 3,180,640 | 3,125,030 | 3,069,430 | 3,013,820 |
| 33 | 4,175,150 | 3,935,120 | 3,806,460 | 3,648,690 | 3,517,110 | 3,408,650 | 3,312,710 | 3,237,430 | 3,127,530 | 3,071,920 | 3,016,330 | 2,960,710 |
| 32 | 4,122,020 | 3,881,950 | 3,753,310 | 3,595,580 | 3,464,010 | 3,355,550 | 3,259,590 | 3,184,350 | 3,074,440 | 3,018,840 | 2,963,230 | 2,907,630 |
| 31 | 4,068,860 | 3,828,810 | 3,700,130 | 3,542,450 | 3,410,910 | 3,302,420 | 3,206,460 | 3,131,250 | 3,021,360 | 2,965,760 | 2,910,160 | 2,854,560 |
| 30 | 4,015,700 | 3,775,620 | 3,646,990 | 3,489,350 | 3,357,810 | 3,249,390 | 3,153,420 | 3,078,150 | 2,968,250 | 2,912,650 | 2,857,050 | 2,801,430 |
| 29 | 3,962,550 | 3,722,490 | 3,593,850 | 3,436,190 | 3,304,700 | 3,196,260 | 3,100,310 | 3,025,050 | 2,915,130 | 2,859,540 | 2,803,940 | 2,748,330 |
| 28 | 3,909,380 | 3,669,310 | 3,540,680 | 3,383,070 | 3,251,620 | 3,143,200 | 3,047,190 | 2,971,970 | 2,862,100 | 2,806,490 | 2,750,900 | 2,695,280 |
| 27 | 3,856,210 | 3,616,090 | 3,487,460 | 3,330,010 | 3,198,480 | 3,090,080 | 2,994,080 | 2,918,840 | 2,808,920 | 2,753,340 | 2,697,720 | 2,642,120 |
| 26 | 3,803,040 | 3,562,950 | 3,434,330 | 3,276,850 | 3,145,400 | 3,036,940 | 2,941,000 | 2,865,740 | 2,755,850 | 2,700,250 | 2,644,630 | 2,589,040 |
| 25 | 3,749,890 | 3,509,800 | 3,381,160 | 3,223,770 | 3,092,330 | 2,983,910 | 2,887,910 | 2,812,670 | 2,702,810 | 2,647,190 | 2,591,580 | 2,535,970 |
| 24 | 3,696,710 | 3,456,630 | 3,328,000 | 3,170,670 | 3,039,220 | 2,930,770 | 2,834,810 | 2,759,540 | 2,649,660 | 2,594,060 | 2,538,440 | 2,482,840 |
| 23 | 3,643,570 | 3,403,460 | 3,274,840 | 3,117,520 | 2,986,110 | 2,877,690 | 2,781,760 | 2,706,490 | 2,596,580 | 2,540,960 | 2,485,350 | 2,429,740 |
| 22 | 3,590,380 | 3,350,280 | 3,221,650 | 3,064,420 | 2,933,070 | 2,824,640 | 2,728,650 | 2,653,420 | 2,543,500 | 2,487,900 | 2,432,290 | 2,376,690 |
| 21 | 3,537,220 | 3,297,150 | 3,168,480 | 3,011,320 | 2,880,000 | 2,771,520 | 2,675,570 | 2,600,300 | 2,490,410 | 2,434,810 | 2,379,200 | 2,323,610 |
| 20 | 3,482,350 | 3,242,230 | 3,113,600 | 2,956,480 | 2,825,150 | 2,716,740 | 2,620,780 | 2,545,520 | 2,435,630 | 2,380,030 | 2,324,430 | 2,268,820 |
| 19 | 3,427,460 | 3,187,380 | 3,058,760 | 2,901,700 | 2,770,350 | 2,661,890 | 2,565,920 | 2,490,690 | 2,380,830 | 2,325,200 | 2,269,610 | 2,214,000 |
| 18 | 3,372,600 | 3,132,500 | 3,003,850 | 2,846,840 | 2,715,480 | 2,607,070 | 2,511,140 | 2,435,870 | 2,325,940 | 2,270,340 | 2,214,750 | 2,159,140 |
| 17 | 3,317,720 | 3,077,630 | 2,949,010 | 2,792,040 | 2,660,710 | 2,552,300 | 2,456,320 | 2,381,060 | 2,271,150 | 2,215,550 | 2,159,960 | 2,104,350 |
| 16 | 3,262,820 | 3,022,730 | 2,894,090 | 2,737,220 | 2,605,910 | 2,497,500 | 2,401,540 | 2,326,270 | 2,216,370 | 2,160,780 | 2,105,180 | 2,049,560 |
| 15 | 3,207,960 | 2,967,800 | 2,839,210 | 2,682,400 | 2,551,120 | 2,442,660 | 2,346,680 | 2,271,410 | 2,161,560 | 2,105,950 | 2,050,340 | 1,994,740 |
| 14 | 3,153,120 | 2,912,950 | 2,784,320 | 2,627,580 | 2,496,290 | 2,387,870 | 2,291,910 | 2,216,640 | 2,106,750 | 2,051,150 | 1,995,550 | 1,939,950 |
| 13 | 3,098,240 | 2,858,080 | 2,729,450 | 2,572,760 | 2,441,500 | 2,333,050 | 2,237,090 | 2,161,840 | 2,051,960 | 1,996,360 | 1,940,750 | 1,885,140 |
| 12 | 3,043,310 | 2,803,200 | 2,674,580 | 2,517,930 | 2,386,690 | 2,278,270 | 2,182,310 | 2,107,050 | 1,997,160 | 1,941,560 | 1,885,950 | 1,830,330 |
| 11 | 2,988,420 | 2,748,320 | 2,619,670 | 2,463,150 | 2,331,900 | 2,223,470 | 2,127,500 | 2,052,250 | 1,942,380 | 1,886,750 | 1,831,150 | 1,775,540 |
| 10 | 2,933,570 | 2,693,430 | 2,564,850 | 2,408,250 | 2,277,050 | 2,168,630 | 2,072,670 | 1,997,370 | 1,887,500 | 1,831,880 | 1,776,290 | 1,720,690 |
| 9 | 2,878,670 | 2,638,610 | 2,510,010 | 2,353,430 | 2,222,250 | 2,113,800 | 2,017,880 | 1,942,580 | 1,832,690 | 1,777,090 | 1,721,490 | 1,665,880 |
| 8 | 2,825,500 | 2,585,420 | 2,456,770 | 2,300,310 | 2,169,170 | 2,060,740 | 1,964,780 | 1,889,550 | 1,779,660 | 1,724,040 | 1,668,440 | 1,612,840 |
| 7 | 2,772,310 | 2,532,220 | 2,403,600 | 2,247,270 | 2,116,130 | 2,007,690 | 1,911,700 | 1,836,430 | 1,726,530 | 1,670,940 | 1,615,340 | 1,559,720 |
| 6 | 2,719,160 | 2,479,100 | 2,350,490 | 2,194,120 | 2,063,020 | 1,954,550 | 1,858,600 | 1,783,340 | 1,673,470 | 1,617,870 | 1,562,250 | 1,506,660 |
| 5 | 2,665,990 | 2,425,850 | 2,297,270 | 2,141,040 | 2,009,910 | 1,901,460 | 1,805,490 | 1,730,260 | 1,620,380 | 1,564,770 | 1,509,180 | 1,453,570 |
| 4 | 2,614,550 | 2,374,430 | 2,245,830 | 2,089,600 | 1,958,510 | 1,850,070 | 1,754,110 | 1,678,840 | 1,568,950 | 1,513,330 | 1,457,740 | 1,402,130 |
| 3 | 2,563,160 | 2,323,010 | 2,194,380 | 2,038,220 | 1,907,140 | 1,798,680 | 1,702,720 | 1,627,460 | 1,517,560 | 1,461,950 | 1,406,350 | 1,350,760 |
| 2 | 2,511,690 | 2,271,550 | 2,142,920 | 1,986,820 | 1,859,170 | 1,750,710 | 1,654,760 | 1,579,530 | 1,469,640 | 1,414,030 | 1,358,420 | 1,302,800 |
| 1 | 2,460,220 | 2,220,100 | 2,091,450 | 1,935,430 | 1,812,930 | 1,704,510 | 1,608,550 | 1,533,290 | 1,423,370 | 1,367,760 | 1,312,160 | 1,256,570 |

【별표 3】<개정 2022. 5.26.,2022.08.30., 2022.12.29., 2023.9.18, 2023.12.28> 시간선택제 기본급표

(단위 : 원)

| | | | | | | | | | | | | 단위 : 원)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호 봉 | 시간선택제 1급 | 시간선택제 2급 | 시간선택제 3급 | 시간선택제 4급 | 시간선택제 5급 | 시간선택제 6급 | 시간선택제 7급 | 시간선택제 8급 | 시간선택제 9급 | 시간선택제 10급 | 시간 선택에 11급 | 시간선택제 12급 |
| 45 | 2,416,510 | 2,296,600 | 2,232,130 | 2,153,180 | 2,087,150 | 2,032,930 | 1,984,960 | 1,947,330 | 1,892,390 | 1,864,590 | 1,836,780 | 1,808,990 |
| 44 | 2,389,910 | 2,270,000 | 2,205,560 | 2,126,620 | 2,060,600 | 2,006,400 | 1,958,400 | 1,920,800 | 1,865,830 | 1,838,040 | 1,810,240 | 1,782,430 |
| 43 | 2,363,360 | 2,243,420 | 2,179,000 | 2,100,020 | 2,034,050 | 1,979,850 | 1,931,860 | 1,894,230 | 1,839,270 | 1,811,490 | 1,783,670 | 1,755,880 |
| 42 | 2,336,770 | 2,216,860 | 2,152,410 | 2,073,480 | 2,007,500 | 1,953,290 | 1,905,290 | 1,867,670 | 1,812,740 | 1,784,930 | 1,757,120 | 1,729,320 |
| 41 | 2,310,190 | 2,190,250 | 2,125,830 | 2,046,900 | 1,980,940 | 1,926,740 | 1,878,750 | 1,841,120 | 1,786,170 | 1,758,370 | 1,730,560 | 1,702,770 |
| 40 | 2,283,640 | 2,163,670 | 2,099,260 | 2,020,360 | 1,954,410 | 1,900,200 | 1,852,210 | 1,814,580 | 1,759,640 | 1,731,850 | 1,704,050 | 1,676,230 |
| 39 | 2,257,060 | 2,137,090 | 2,072,710 | 1,993,770 | 1,927,850 | 1,873,640 | 1,825,650 | 1,788,040 | 1,733,100 | 1,705,290 | 1,677,480 | 1,649,680 |
| 38 | 2,230,480 | 2,110,510 | 2,046,110 | 1,967,220 | 1,901,320 | 1,847,100 | 1,799,100 | 1,761,460 | 1,706,530 | 1,678,730 | 1,650,920 | 1,623,130 |
| 37 | 2,203,910 | 2,083,930 | 2,019,540 | 1,940,640 | 1,874,770 | 1,820,570 | 1,772,560 | 1,734,940 | 1,680,000 | 1,652,190 | 1,624,380 | 1,596,580 |
| 36 | 2,177,330 | 2,057,340 | 1,992,970 | 1,914,060 | 1,848,230 | 1,794,000 | 1,746,010 | 1,708,380 | 1,653,440 | 1,625,640 | 1,597,840 | 1,570,020 |
| 35 | 2,150,750 | 2,030,740 | 1,966,400 | 1,887,520 | 1,821,660 | 1,767,440 | 1,719,460 | 1,681,840 | 1,626,890 | 1,599,080 | 1,571,270 | 1,543,480 |
| 34 | 2,124,180 | 2,004,170 | 1,939,810 | 1,860,950 | 1,795,120 | 1,740,910 | 1,692,920 | 1,655,300 | 1,600,340 | 1,572,530 | 1,544,740 | 1,516,930 |
| 33 | 2,097,590 | 1,977,560 | 1,913,250 | 1,834,380 | 1,768,570 | 1,714,340 | 1,666,380 | 1,628,720 | 1,573,800 | 1,545,990 | 1,518,190 | 1,490,380 |
| 32 | 2,071,030 | 1,950,990 | 1,886,670 | 1,807,810 | 1,742,030 | 1.687.800 | 1,639,800 | 1,602,190 | 1,547,240 | 1,519,450 | 1,491,630 | 1,463,830 |
| 31 | 2,044,460 | 1,924,420 | 1,860,080 | 1,781,240 | 1,715,480 | 1,661,230 | 1,613,260 | 1,575,640 | 1,520,690 | 1,492,890 | 1,465,080 | 1,437,290 |
| 30 | 2,017,870 | 1,897,800 | 1,833,530 | 1,754,700 | 1,688,920 | 1,634,720 | 1,586,730 | 1,549,090 | 1,494,140 | 1,466,360 | 1,438,540 | 1,410,740 |
| 29 | 1,991,290 | 1,871,250 | 1,806,940 | 1,728,120 | 1,662,380 | 1,608,150 | 1,560,180 | 1,522,540 | 1,467,600 | 1,439,780 | 1,411,980 | 1,384,190 |
| 28 | 1,964,720 | 1,844,670 | 1,780,360 | 1,701,560 | 1,635,820 | 1,581,640 | 1,533,620 | 1,496,010 | 1,441,070 | 1,413,260 | 1,385,470 | 1,357,670 |
| 27 | 1,938,130 | 1,818,070 | 1,753,760 | 1,675,020 | 1,609,240 | 1,555,050 | 1,507,080 | 1,469,440 | 1,414,490 | 1,386,690 | 1,358,870 | 1,331,070 |
| 26 | 1,911,540 | 1,791,480 | 1,727,190 | 1,648,460 | 1,582,720 | 1,528,500 | 1,480,510 | 1,442,890 | 1,387,940 | 1,360,140 | 1,332,330 | 1,304,540 |
| 25 | 1,884,970 | 1,764,930 | 1,727,130 | 1,621,910 | 1,556,180 | 1,501,990 | 1,453,970 | 1,416,360 | 1,361,420 | 1,333,600 | 1,305,820 | 1,278,020 |
| 24 | 1,858,370 | 1,738,330 | 1,674,030 | 1,595,350 | 1,529,630 | 1,475,420 | 1,427,430 | 1,389,790 | 1,334,840 | 1,307,040 | 1,279,250 | 1,251,440 |
| 23 | 1,831,810 | 1,730,330 | 1,647,440 | 1,568,780 | 1,503,070 | 1,448,880 | 1,427,430 | 1,363,270 | 1,308,310 | 1,280,510 | 1,252,710 | 1,224,910 |
| 22 | 1,805,210 | 1,685,160 | 1,620,850 | 1,542,240 | 1,476,550 | 1,422,340 | 1,374,350 | 1,336,720 | 1,281,780 | 1,253,970 | 1,232,710 | 1,198,370 |
| 21 | 1,778,630 | 1,658,590 | 1,594,260 | 1,515,690 | 1,450,000 | 1,395,770 | 1,347,810 | 1,310,180 | 1,255,240 | 1,227,440 | 1,199,620 | 1,171,830 |
| 20 | 1,751,200 | 1,631,130 | 1,566,830 | 1,488,260 | 1,422,590 | 1,368,400 | 1,320,410 | 1,282,790 | 1,227,840 | 1,200,040 | 1,172,240 | 1,171,030 |
| 19 | 1,731,200 | | | | | | | | | | | |
| 18 | | 1,603,720 | 1,539,390 | 1,460,870 | 1,395,190 | 1,340,970 | 1,292,980 | 1,255,370 | 1,200,430 | 1,172,640 | 1,144,820 | 1,117,020 |
| \vdash | 1,696,340 | 1,576,270 | 1,511,950 | 1,433,450 | 1,367,750 | 1,313,560 | 1,265,580 | 1,227,950 | 1,173,000 | 1,145,190 | 1,117,390 | 1,089,600 |
| 17 | 1,668,870 | 1,548,840 | 1,484,510 | 1,406,040 | 1,340,370 | 1,286,180 | 1,238,170 | 1,200,550 | 1,145,610 | 1,117,790 | 1,090,000 | 1,062,200 |
| 16 | 1,641,430 | 1,521,410 | 1,457,070 | 1,378,620 | 1,312,980 | 1,258,780 | 1,210,790 | 1,173,150 | 1,118,220 | 1,090,410 | 1,062,610 | 1,034,800 |
| 15 | 1,613,990 | 1,493,930 | 1,429,640 | 1,351,220 | 1,285,590 | 1,231,350 | 1,183,370 | 1,145,730 | 1,090,810 | 1,062,990 | 1,035,210 | 1,007,390 |
| 14 | 1,586,570 | 1,466,510 | 1,402,180 | 1,323,810 | 1,258,180 | 1,203,950 | 1,155,970 | 1,118,350 | 1,063,420 | 1,035,600 | 1,007,790 | 979,980 |
| 13 12 | 1,559,140 | 1,439,050 | 1,374,740 1,347,310 | 1,296,410 | 1,230,770 | 1,176,550 1,149,160 | 1,128,560 | 1,090,930 | 1,036,010 | 1,008,200 | 980,400 | 952,590 |
| \vdash | 1,531,670 | 1,411,620 | | 1,269,000 | | | 1,101,170 | 1,063,550 | 1,008,600 | 980,790 | 953,010 | 925,190 |
| 11 | 1,504,250 | 1,384,190 | 1,319,860 | 1,241,600 | 1,175,980 | 1,121,750 | 1,073,770 | 1,036,150 | 981,200 | 953,410 | 925,600 | 897,790 |
| 10 | 1,476,800 | 1,356,730 | 1,292,460 | 1,214,140 | 1,148,560 | 1,094,340 | 1,046,350 | 1,008,720 | 953,770 | 925,960 | 898,170 | 870,360 |
| 9 | 1,449,370 | 1,329,310 | 1,265,030 | 1,186,730 | 1,121,140 | 1,066,940 | 1,018,940 | 981,310 | 926,370 | 898,570 | 870,760 | 842,960 |
| 8 | 1,422,770 | 1,302,730 | 1,238,410 | 1,160,170 | 1,094,600 | 1,040,390 | 992,420 | 954,790 | 899,860 | 872,040 | 844,240 | 816,440 |
| 7 | 1,396,170 | 1,276,120 | 1,211,830 | 1,133,650 | 1,068,090 | 1,013,860 | 965,850 | 928,230 | 873,290 | 845,500 | 817,680 | 789,880 |
| 6 | 1,369,610 | 1,249,580 | 1,185,250 | 1,107,080 | 1,041,530 | 987,300 | 939,320 | 901,690 | 846,760 | 818,940 | 791,140 | 763,340 |
| 5 | 1,343,020 | 1,222,940 | 1,158,660 | 1,080,550 | 1,014,980 | 960,740 | 912,770 | 875,150 | 820,210 | 792,410 | 764,620 | 736,800 |
| 4 | 1,317,290 | 1,197,240 | 1,132,940 | 1,054,810 | 989,290 | 935,050 | 887,090 | 849,430 | 794,500 | 766,670 | 738,880 | 711,080 |
| 3 | 1,291,600 | 1,171,540 | 1,107,210 | 1,029,150 | 963,590 | 909,370 | 861,400 | 823,760 | 768,790 | 741,000 | 713,200 | 685,380 |
| 2 | 1,265,870 | 1,145,790 | 1,081,500 | 1,003,440 | 939,610 | 885,380 | 837,390 | 799,780 | 744,840 | 717,030 | 689,240 | 661,430 |
| 1 | 1,240,130 | 1,120,080 | 1,055,750 | 977,740 | 916,480 | 862,280 | 814,300 | 776,660 | 721,710 | 693,920 | 666,100 | 638,310 |

^{※ 1}일 4시간 근무에 따른 기본급표임

[※]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변경될 수 있음

【별표 4】<개정 2022.12.29.>

연장 운영 기간제 직원 평가표

1. 평가대상자

| 성명 | 사번 | 소 속 | 평가대상기간 |
|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| | | 20 ~ 20(00개월) |

2. 평가방법

○ 재고용자 소속부서에서 성과기여도(가중치 60%), 조직융화성(가중치 20%), 업무성실성(가중치 20%) 항목으로 평가

※ 결과활용 : 종합점수 80점 이상 획득 시 연장 대상

3. 평가내용

| 구분 | | 평가결과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|--|--|
| 1 | ① ㆍ업무수행능력 및 부서 성과ㆍ실적 기여도 | | | | | | | | |
| 성과기여도 | 구분 | S(탁월) | A(우수) | B(보통) | C(미흡) | D(부진) | 점 | | |
| [60점] | 배점 | 60 | 54 | 48 | 42 | 36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2 | • 협업 능력 | 등 조직 | 융화도 | | | | | | |
| 조직융화성 | 구분 | S(탁월) | A(우수) | B(보통) | C(미흡) | D(부진) | 점 | | |
| [20점] | 배점 | 20 | 18 | 16 | 14 | 12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3 | ③ ·근태 등 업무수행 태도 및 윤리의식 수준 | | | | | | | | |
| 업무성실성 | 구분 | S(탁월) | A(우수) | B(보통) | C(미흡) | D(부진) | 점 | | |
| [20점] | 배점 | 20 | 18 | 16 | 14 | 12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종합평가점수 (①+②+③) | | | | | | | | |

| 종합평가의견 | | 요청사항 |
|--------|--|-------------|
| | | 기간 연장 or 종료 |

| 부 서 장 | 소속 및 직위 : | 성명 (서명)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
【별지 제1호 서식】(삭제) <개정 2022. 5.26.>

【별지 제2호 서식】(삭제) <개정 2022. 5.26.>

【별지 제3호 서식】<개정 2022. 5.26.>

표준근로계약서

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사업주"라 함)와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다.

- 1. 근로개시일 : 20년월일부터
- 2. 근 무 장 소 : 한국가스기술공사 (※ 사용자의 "인사발령"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3. 업무의 내용 :
- ※ 업무의 내용은 사용자의 "인사발령"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 4. 소정근로시간 : 09:00 ~18:00 (** 사용자의 "취업규칙"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※ 사업시간, 종업시간, 휴게시간 등은 별도로 정함
- 5. 근무일/휴일 : 주5일근무/일요일 관광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(※ 사용자의 "취업규칙"에 따라 달리질 수 있음)
- 6. 임금
- 월 급 :워
- ※ 경평성과급 및 내부 성과급에 따라 월급여는 달라질 수 있음
- 상여금 : 있음 (),없음 ()
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), 없음 ()
- · 직능급원, 직능급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
- 임금지급일 : 매월 20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),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√)
- ※ 임금은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사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
- 7. 연차유급휴가
-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"취업규칙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- 8. 사회보험 적용여부
- ☑ 고용보험☑ 산재보험☑ 국민연금☑ 건강보험
- 9. 근로계약서 교부
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- 10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- 11. 기타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, "사용자"의 취업규칙에 의함 20년월일

(사업주) 사업체명:

주소:

대 표 자 :(서명)

(근로자) 주소:

연 락 처 : <근로계약서 서면수령확인>

성명 : (서명)○ 수령자 : (인)

【별지 제4호 서식】 (삭 제)<개정 2017.9.22>